

##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 설치및운영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2. 12. 6.  
행정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11월 26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2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92회 제2차정례회 제4차위원회 (2002. 12. 6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과장 김 기 석

#### 가. 제안이유

지역문화· 예술의 진흥과 건전가요 보급을 위하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합창단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정서함양, 구민 화합에 기여함을 물론,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합창단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으로 규정함.  
(안 제2조)
-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,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규정함.(안 제3조)
- 합창단은 음악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· 예술의 진흥, 공연을 통하여 구민의 정서함양 및 구민화합에 기여하도록 규정함.

(안 제6조)

○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구민으로서 합창 등 성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 선발하고, 단원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 (안 제7조)

○ 지휘자,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고, 위촉기간 만료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단원은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재 위촉된 것으로 보며, 단원의 활동연령은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. (안 제8조)

○ 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 상호간의 연락 등을 위하여 총무를 두되, 총무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9조)

○ 지휘자,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들의 합창단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, 반주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12조)

○ 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시설 및 장비 등 구에서 제공가능한 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13조)

○ 기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 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제정조례안은 임의단체인 마포여성합창단을 구립합창단으로 창단하여 지역문화활성화와 건전가요를 보급하는데 기여하고 구민의 정서함양과 구민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자 함.

<주요내용>

○ 안 제3조에는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단원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합창단은 구청장이 운영하도록 하며 안 제7

조에서는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50세 이하의 구민으로써 합창 등 성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 선발하도록 단원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단원의 위·해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서는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지휘자, 반주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#### <검토의견>

○ 동 조례안은 1972년부터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마포여성합창단을 구립합창단으로 창단하여 우리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에는 합창단 지원비로 연간 1,560만원이 일부 지원되었으나 앞으로 구립합창단이 설치되면 지휘자 및 반주자의 인건비는 물론 운영비등으로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는 사료되나 서울시 25개 구 중 17개 구가 구립합창단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도 구립 문화예술단체를 보유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연활동을 통해 지역문화활성화와 건전가요 보급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합창단이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박지위 위원) : 조례안 통과 후에 관련예산 심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?
- 답변요지(김기석 문화체육과장) : 절차가 결여되었음.
- 질의요지(정형기 위원) : 현재 합창단 명칭은?
- 답변요지(김기석 문화체육과장) : 마포여성합창단으로 동아리 형태의 단체임.
- 질의요지(유응봉 위원) : 구립합창단 창단 후 마포여성합창단의 존립은?
- 답변요지(김기석 문화체육과장) : 남아 있을 수는 있으나 예산지원은 없어짐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#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2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지역문화·예술의 진흥과 건전가요 보급을 위하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합창단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정서함양, 구민화합에 기여함은 물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합창단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으로 규정함.(안 제2조)
- 나.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,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규정함.(안 제3조)
- 다. 합창단은 음악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·예술의 진흥, 공연을 통하여 구민의 정서함양 및 구민화합에 기여하도록 규정함.(안 제6조)
- 라.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50세이하의 구민으로서 합창 등 성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 선발하고, 단원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(안 제7조)
- 마. 지휘자,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고, 위촉기간 만료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단원은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 부터 2년간 재위촉된 것으로 보며, 단원의 활동연령은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.(안 제8조)
- 바. 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 상호간의 연락 등을 위하여 총무를 두되, 총무는 단원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9조)

사. 지휘자,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들의 합창단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, 반주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  
(안 제12조)

아. 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시설 및 장비 등 구에서 제공가능한 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13조)

자. 기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  
(안 제14조)

### 3. 근거법령

- (1) 문화예술진흥법(2002.1.26 법률 제6634호) 제3조
- (2) 지방자치법(2002.3.25 법률 제6669호) 제9조제2항제5호
- (3) 지방자치법시행령(2000.7.1 대통령령 제16879호) 제8조 관련 별표1

4. 조례(안)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필요함

### 6. 기타사항

- (1) 입법예고(2002.10.31~11.20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(2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: 2002. 11. 25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지역문화·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에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합창단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(이하 “합창단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①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.

제4조(단장의 직무) 단장은 합창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자, 반주자 및 단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조(운영) ①합창단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운영한다.

②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·시행하며, 합창단의 활동을 지원한다.

③합창단의 공연예술활동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기능)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·예술의 진흥
2.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
3. 구에서 지정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구민화합에 기여

제7조(단원의 자격 및 선발) ①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만20세이상 만50세이하의 구민으로서 합창 등 성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 선발한다. 단,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있어서 예외로 한다.

②단원의 자격과 선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단원의 위·해촉) ①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②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촉기간 만료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단원은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.

③위촉된 단원의 합창단 활동연령은 만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④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
2.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4회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
3. 합창단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
4.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합창단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

제9조(총무) ①단장은 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상호간의 연락 등을 위하여 총무 1인을 둔다.

②총무는 단원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이 임명한다.

③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단원의 임무) 단원은 합창단과 본인의 음악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 및 단원간 인화에 노력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창단의 연습과 공연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.

제11조(공연연습) 합창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참가를 위한 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2조(경비의 지원) 지휘자, 반주자 및 단원 들의 합창단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, 반주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시설 등의 이용) 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시설 및 장비 등 구에서 제공가능한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